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866
------	-----

2023. 6. 16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5월 30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 6. 16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정수용 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- 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한시기구의 연장 및 신설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
(1개) 및 기존 한시기구(3개)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
 - (신설) 한강사업추진단 신설
 - ▶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 신설
(’ 23.7.17. ~ ’ 24.7.16.)
 - (연장) 주택공급기획관·균형발전기획관·자원회수시설추진단 존속기한 연장
 - ▶ 존속기한 1년 연장(’ 23.8.19. ~ ’ 24.8.18.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한강사업추진단을 1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, 현행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, 균형발전기획관,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됨.

나. 서울시 한시기구의 현황과 설치 배경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‘행정기구·정원규정’)에 따르면,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8조 제1항)¹⁾.
-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,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(최장 6년)할 수 있음(제8조 제4항·제5항)²⁾.

1)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2)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- 시·도는 3급 이상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(제21조)³⁾, 한시기구의 적정성, 성과목표 달성도,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해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실시된 조직개편(2022.7)에서 기존의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고, 주택공급기획관, 균형발전기획관,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함(2022.8.19).
- 당시 한시기구를 정규기구화하고 연차별로 법외 임시기구를 폐지하겠다는 ‘한시·임의기구 정비계획’에 따라, 주택공급기획관과 균형발전기획관을 한시기구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환경기획관만 법외 임시기구로 남아 있음.

< 서울시 법외 임시기구 현황 >

직 급	종 전	현 행	비 고
3급 (3→1개)	환경에너지기획관	환경기획관	
	주택공급기획관	-	한시기구로 전환
	균형발전기획관	-	한시기구로 전환

다. 한시기구 신설(안 제21조제4항)

- 서울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“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” (2023.3.)에 따라 4대 핵심전략별 10대 과제를 설정하고, 한강을 글로벌 방문객이 찾는 광역적 관광·여가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임.

3) 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)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(장과 보조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의 직급이 시·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

<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개요 >

비전	함께 누리는 '더 위대한 한강'			
4대 핵심전략	자연과 공존하는 한강	이동이 편리한 강	매력이 가득한 한강	활력을 더하는 한강
10대 전략과제	자연성 회복 자연친화적 환경	한강연결 수상산책 이동성 확장	감성조망명소 문화예술공간 축제·행사	성장거점 강화·연계 주거지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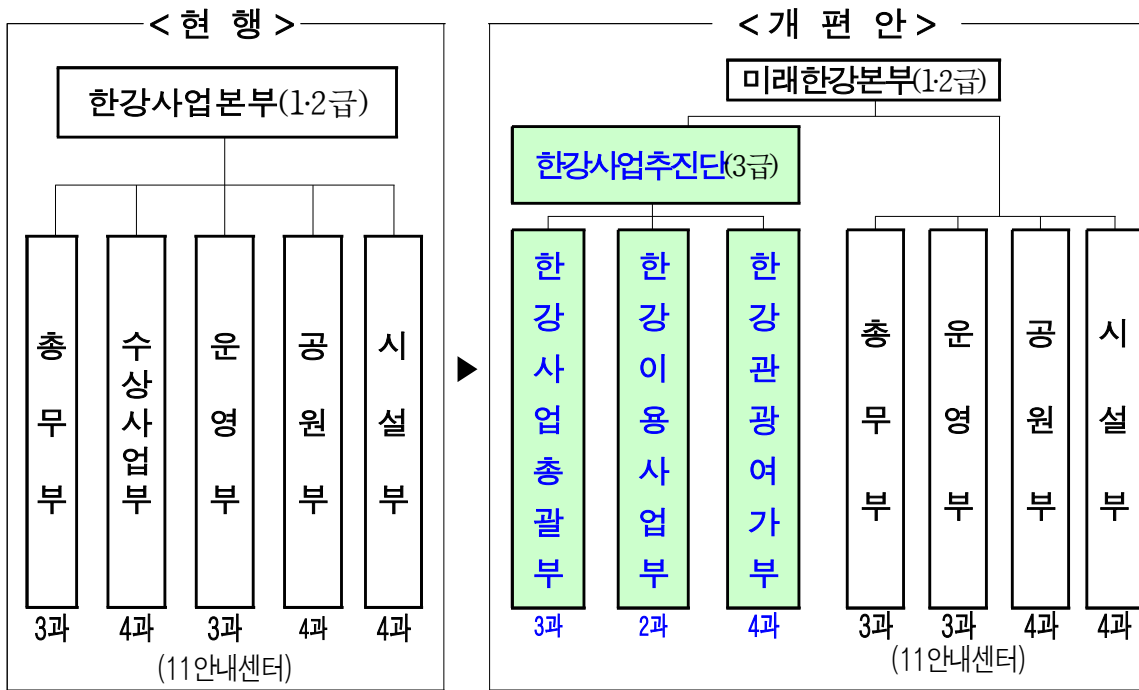
- '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' 는 11개 실·국에서 55개 사업이 분산 추진되는 서울시의 행정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하는 대형사업임.
- 이에 지난 조직개편(2023.4)에서 서해벚길 복원과 서울항(여의도) 조성 등 핵심전략 과제를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'미래한강본부' 로 명칭을 변경하고, '수상운영과' 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.
- 그러나 실·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, 민간투자 유치 등 사전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, 중앙부처(환경부 등) 및 인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업무 등을 '미래한강본부장' (1·2급)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.

<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담당 실국 현황 >

실 국	사업 수	주요 사업
한강사업본부 (1·2급)	19개	서울항, 서해벚길 복원, 자연형 물놀이장·캠핑장, 한강 공원 보행 접근시설 정비 등
미래공간기획관 (3급)	8개	서울링, 노들섬 조성, 제2세종문화회관 등

관광체육국 (2·3급)	8개	열기구 서울야경체험, 한강 흥프로젝트 등
도시계획국 (2·3급)	4개	여의도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
디자인정책관 (2급)	4개	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야간경관 활성화 등
푸른도시여가국 (2·3급)	4개	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등
기타 (안전총괄실 외 4개 실국)	8개	곤돌라(균형발전본부), 한강 자율주행버스(도시교통실),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(안전총괄실) 등

- 개정안은 3급 한시기구로 ‘한강사업추진단’ 을 신설하고 ‘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’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(한강사업총괄부, 한강이용사업부, 한강관광여가부)를 개편해 전담 관리토록 할 계획임.



- 미래한강본부의 기존 조직과 인력은 11개의 한강공원, 수상시설 등 방대한 관할구역과 시설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시설 조성 등이 포함된 ‘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’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
- 따라서 민선8기 역점사업인 ‘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’의 원활한 수행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미래한강본부장(1·2급)을 보좌하는 한강사업추진단(3급)을 한시기구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.

라. 한시기구 연장(부칙 제3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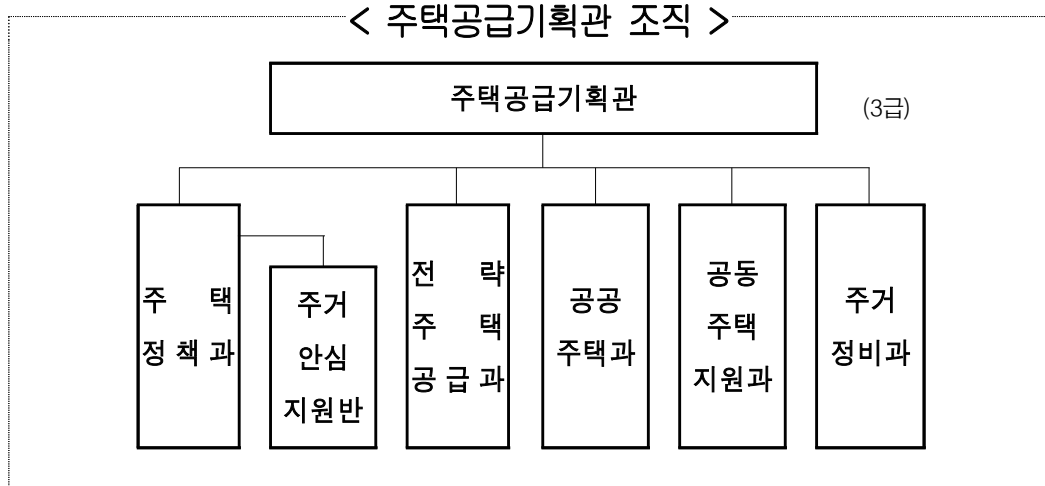
- 현행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, 균형발전기획관,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3년의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, 1년 연장(2023.8.19 ~ 2024.8.18)으로 협의됨.

< 서울시 한시기구 현황 >

부서명	주요업무
주택공급기획관 (3급)	·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 ·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·청년주택, 상생주택, 역세권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
균형발전기획관 (3급)	·지역별 핵심거점 조성 추진업무 총괄 및 조정 ·녹지생태도심 조성, 국제교류복합지구 건립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재생과 개발·정비 방식을 융합한 도시공간 혁신 총괄 ·대형 프로젝트 사업별 공정관리
자원회수시설 추진단 (3급)	·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및 기존 시설 고도화 ·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사전절차 이행, 주민 설득, 민원 해결 ·기존 소각시설(4개소) 고도화·현대화 추진

- 주택공급기획관(1관 5과 1반, 162명)은 지난 1년간 신속통합기획 확대(총 81개소), 재건축 3대 규제(분양가 상한제·재건축 안전진단 기준·재건축 초과이익제) 개선, 모아타운·주택 도입,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(상생주택) 공급 등을 추진함.

- 향후에도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, 전세 사기 위기의 주거약자 보호대책 마련, 주택공급 분야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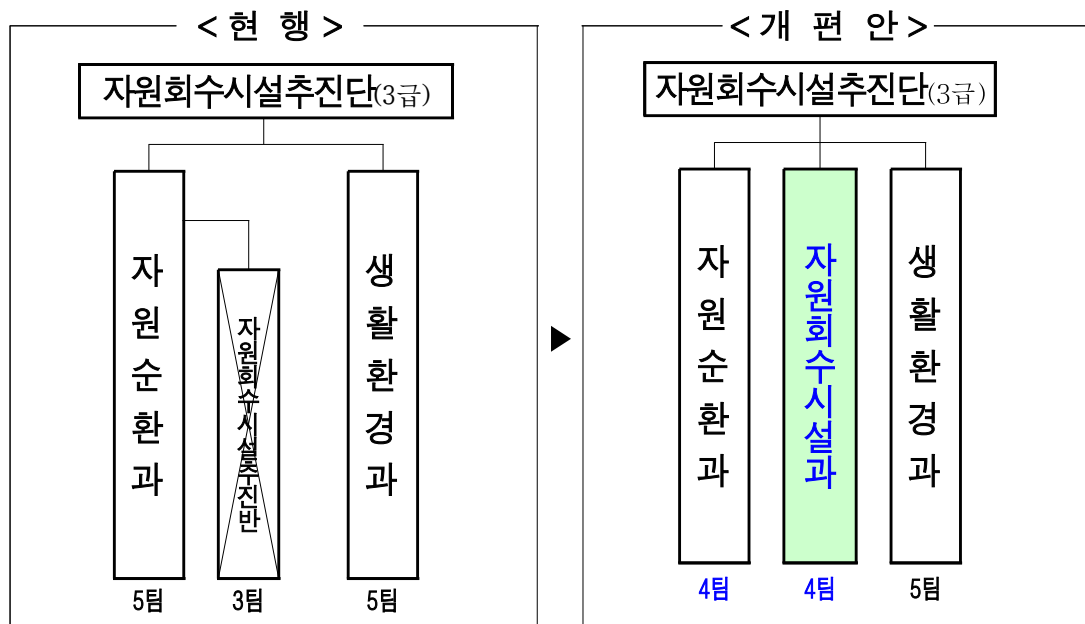


- 균형발전기획관(1관 6과, 129명)은 녹지생태도심 조성(도심권), 창동·상계 일대 신성장 거점 조성(동북권), 신경제 중심거점 조성(서북권), 광화문광장 개장 등을 추진함.

- 앞으로도 도심전체 녹지공간 구상 개발·정비계획 수립, 권역별 성장 전략 수립·실행, 남산 곤돌라 설치 등의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함.



- 자연회수시설추진단(1단 2과 1반, 75명)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,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함.
-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적기 건립과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추진반(4·5급)을 자원회수시설과(4급)로 확대·격상할 예정임(7.1. 시행)



- 향후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,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임.
- 현행 한시기구들은 주택공급, 권역별 특화발전,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해 신설되었고, 대부분 중장기 업무에 해당되어 1년 만에 목표 달성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- 또한, 담당 업무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의견조정, 종합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담 조직이 부재한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, 신설된 지 1년에 불과한 한시기구들의 조직 안정화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행정안전부가 한시기구 존속기한의 연장을 협의하면서 2023년 말까지 마지막 법외 임시기구인 환경기획관(3급)의 폐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 총정원 변동 없이
직렬·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강사업추진단 신설로 ‘한강사업추진단장’(3급) 1명 및 그 산하에
‘한강사업총괄부장’(4급) 1명, ‘한강전략사업부장’(4급) 1명 정원 신설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3 \rightarrow 3\text{급} + 1, 4\text{급} + 2$
- 나.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연구직(10명)
및 지도직(1명)의 정원 조정
- (연구직) 407명 \rightarrow 408명(연구관 +10명 연구사 $\Delta 9$ 명)
※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1$
- (지도직) 24명 \rightarrow 25명(지도관 +1) ※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1$
- 다.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및 임기제 계약 만료에 따른 인력
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(7명)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7 \rightarrow$ 전문경력관(동물사육) +7
- 라.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고압가스
안전관리자 선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(1명)
-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$\Delta 1 \rightarrow$ 전문경력관(고압가스안전관리) +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해당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관련 규정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:
협의 완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'23. 5. 19. ~ 5. 23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(☎2133-6729)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(조례 제8695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, 3급란, 4급란, 5급 이하 소계란, 전문경력관 소계란, 연구직 계란, 연구관란, 연구사란, 지도직계란, 지도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715					
-------	--------	--	--	--	--	--

3급	18	8		1	9	
----	----	---	--	---	---	--

4급	258	153	19	8	70	8
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5급 이하 소계	10,235					
----------	--------	--	--	--	--	--

전문경력관 소계	157					
----------	-----	--	--	--	--	--

연구직 계	408					
-------	-----	--	--	--	--	--

연구관	73	8		41	24	
-----	----	---	--	----	----	--

연구사	335					
-----	-----	--	--	--	--	--

지도직 계	25					
-------	----	--	--	--	--	--

지도관	3			3		
-----	---	--	--	---	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**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**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**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**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**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총 정원 변동이 없어,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(☎ 2133-6729)